

제증명수수료 규정

제1조(목적) 이 규정은 예원예술대학교 (이하 “본교”라 한다)에서 발행하는 제증명의 수수료징수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

제2조(적용) 제 증명서 발행에 대한 수수료의 징수는 다른 규정에 규정되어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이 규정에 의한다.

제3조(징수대상 및 요금) ① 수수료를 징수할 사항과 그 요금은 다음과 같다.

증명별	구 분	수 수 료		비 고
		국 문	외국문	
성 적 증 명 서		500	1,000	재발급시
졸 업 증 명 서		500	1,000	
재 학 증 명 서		500	1,000	
수 료 증 명 서		500	1,000	
재 적 증 명 서		500	1,000	
학 생 증		3,000	-	
이 수 증 명 서		500	1,000	재발급시
기 타 증 명 서		500	1,000	
도 서 관 이 용 증		3,000	-	
시 간 강 사 경 력 증 명		500	1,000	
F A X 민 원		500	1,000	제비용 200원

② 사진으로 전항의 증명을 하는 경우에는 전 항의 수수료 외에 그 실비를 추가 징수할 수 있다.

제4조(징수면제) 국가기관이나 공공단체가 그 직무상의 필요에 의하여 신청한 증명에 대하여는 수수료를 징수하지 아니할 수 있다.

제5조(수수료 징수 및 처리) ① 수수료는 제증명 발급신청서를 접수할 때에 징수하며, 세입 조치한다.

② 납입된 수수료는 청구사항을 변경 또는 취소하여도 이를 반환하지 아니한다.

부 칙(2000. 3. 2)

1. (시행일) 이 규정은 2000년 3월 2일부터 시행한다.

부 칙(2001. 1. 1)

1. (시행일) 이 규정은 200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.

부 칙(2003.10. 6)

1. (시행일) 이 규정은 2003년 10월 6일부터 시행한다.

부 칙(2009. 2. 1)

1. (시행일) 이 규정은 2009년 2월 1일부터 시행한다.